



## 서울대학교 계정관리 지침

[시행 2025. 1. 16.] [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2호, 2025. 1. 16., 일부개정.]

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, 02-880-5379

**제1조(목적)**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사용에 필요한 통합계정을 관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이용자격)** 통합계정(이하 '계정'이라 한다.)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그룹은 다음과 같다.

그룹명	세부구분
교원	전임, 비전임, 연구원, 조교, 교사
직원	법인, 자체, 기금, 용역, 공익요원
학생	본교생, 교환/방문학생
퇴직자	전임교수 퇴직자, 명예교수, 법인직원 퇴직자, 공로직원
동문	본교 졸업생
일반인	학외 이용자
기관	기관

**제3조(이용자 계정 부여)** ① 개인의 경우 개인당 1개 계정을 부여하여 통합 관리한다.

② 기관의 경우 기관별 1개의 계정을 발급하되, 발급 가능한 기관은 학칙에 명시된 기관으로 한다. 단,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의 기관계정 발급 또는 추가 발급에 대하여는 정보화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.

③ 계정은 5~20자 범위 내에서 정하고, 신청한 계정은 중복되지 않는 한 신청한 대로 발급한다.

**제4조(이용자 계정 신청 절차)** 계정 신청은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(이하 '포털')에서 신청한다. 단, 기관그룹의 계정은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비밀번호 변경 및 관리)** ① 비밀번호 변경은 포털에서 한다.

②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,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~20자 범위 내에서 정하고, 정보화본부장의 안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 이용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 계정과 동일하지 않은 것
2.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
3.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
4.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
5.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
6.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
7.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

**제6조(이용자 계정 관리의 의무)** ① 개인 계정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이용자는 계정, 비밀번호 및 계정의 개인정보들을 탈취당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, 이를 즉시 정보화본부장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정보화본부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이용자의 계정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
2. 이용자의 계정이 서울대학교(관리자)의 계정으로 오인되었거나,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
3. 이용자의 계정이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목적,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

- 4. 계정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보화본부장에게 알리지 않았거나, 통보 후 받은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
- 5. 계정이 현행법령, 학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

**제7조(유효기간)** 이용자 그룹별 계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.

그룹명	세부구분	유효기간
고원	전임, 비전임, 연구원, 조교, 교사	재직기간
직원	법인, 자체, 기금, 용역, 공익요원	재직기간
학생	본교생, 교환/방문학생	자학 및 수학기간
퇴직자	전임교수 퇴직자, 명예교수, 법인직원 퇴직자, 공로직원	평생
동문	본교 졸업생	평생
일반인	학외 이용자	1년
기관	기관	존속기간

**제8조(계정 변경)** 계정 변경은 불가능하다.

**제9조(계정 휴면 및 만료 정책)** ① 계정 탈퇴시, 시스템에서 직접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.

- ② 퇴직자, 동문 (평생 계정)은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휴면처리 된다. 휴면처리된 계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. 단, 휴면처리된 계정은 휴면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삭제된다.
- ③ 유효기간이 평생이 아닌 이용자 그룹은 유효기간 상태 만료시점으로부터 즉시 계정이 정지되고, 정지된 계정은 정지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삭제된다. 단, 정지된 일반인 계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④ 계정 이용이 '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'에 위배되는 경우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사전 통보 없이 휴면처리 또는 삭제할 수 있다.

**부칙** <제00001호, 2013. 7. 16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2호, 2017. 6. 8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00003호, 2025. 1. 16.>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